##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시회보장 기능 강회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관련 번 호 **690** 

제안년월일: 2018년 6월 17일 제 안 자: 보건복지위원장

#### 1. 수정이유

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강화이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지역사회보장 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규정 및 사업 수행 시 혼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을 신설 등 필요성이 있어 이를 수정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(안 제1조).
- 나. 찾동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 신설(안 제5조).
- 다. 시장의 찾동 지역사회보장 지원에 대한 상임위 제출 및 보고 를 실행계획 제출 및 보고로 수정함(안 제6조).

- 라. 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함 (안 제7조).
- 마. 제7조제1항제2호의 시행의 운영주체가 자치구청장으로 이에 따라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고 소관기관과의 협의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.
- 바. 통장 및 반장 참여에 관한 필요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을 규정함(안 제10조).
- 사. 주민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운영경비 조항 및 찾동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 취급 규정을 삭제함.(안 제12조 및 안 제14조).
- 아. 예산지원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함(안 제15조).

3. **참고사항** : 없음.

##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시회 기능강회에 관한 조례인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 기능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(목적) 중 "동주민센터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의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형성함에 이바지함"을 "「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"으로 수정한다. 안 제5조(다른조례와의 관계) 찾동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 규정을 신설한다.

안 제5조(기본 계획 등) 는 안 제6조로 수정한다.

안 제6조(시행계획 제출 및 보고)는 안 제7조로 하여 안 제6조 중 "시행계획"을 "실행계획"으로 수정한다.

안 제7조(사업의 범위)는 안 제8조로 하여 안 제7조제1항 중 "경우에는 직접"을 "경우에는 신청 또는 동의를 거쳐 직접"으로, 제3호 "그밖의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하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"로 수정하고 제2항 "제공하여야하며, 이를 위해 비용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"를 "제공하여야한다"로 수정한다. 제3항 "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사례회의를 적극활용하여야한다. "를 "사회보장급여와 민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

계·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. "로 수정한다.

안 제9조(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)는 안 제10조로 하여 안 제9조 제1항 중 "자치구에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.)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과 인력을 지원 할 수 있다."를 "자치구청장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.)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."로 수정하고, 안 제2항 중 "배치할 수 있다."를 "배치에 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."로 수정한다.

안 제10조(통장 및 반장 참여)는 안 제11조로하여 안 제10조제2항 중 "활동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성과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"를 "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로 수정하고, 제3항은 삭제한다.

안 제11조(역량강화)는 안 제12조로한다.

안 제12조(주민과 협력강화)와 안 제14조(비밀준수)는 삭제한다.

안 제15조(예산지원)는 안 제14조로 하여 안 제15조 중 "서울특별시장"은 "시장"으로, "범위에서 찾동 운영비의"는 "안에서 찾동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"로 수정한다.

안 제16조(시행규칙)는 안 제15조로 한다.

#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시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안

### 수정안조문 대비표(안)

제 정 안	수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찾아가는 <u>동주민센</u> 터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보장의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를 형성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「서울특별시 찾</u> 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 한 조례」에 따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의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〈신 설〉	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는 찾 동의 지역사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제6조(시행계획 제출 및 보고)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수립 하여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 다)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 적과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5월말까지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	제 <u>7</u> 조(실행계획 제출 및 보고) ① 실행계획  ② 실행계획
제7조(사업의 범위) 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을 발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. 1. 65세 도래자 등 어르신 가정, 출산 가정, 양육수당 수급가정 2. 빈곤위기가정, 학대·폭력 등 위기가정	. 제8조(사업의 범위) 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을 발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동의를 거쳐 직접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. 1

제 정 안	수 정 안
3. 그 밖의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정	3 <u>에 대해</u> 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② 시장은 지역사회 내에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하여 지역 내 서비스와 연계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비용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	②  <u>제공하여야 한다.</u>
③ 시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에게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사례 회의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	③           사회보장급여와 민간 서         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·제공하는 통합사         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.
④ 시장은 지역사회 주민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돌보며 나눔을 실천하는 주민 주도의 복지공동체를 지원하여야 한다.	4
제 <u>9</u> 조(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) ① 시 장은 제7조제1항제2호의 시행을 위하여 자치구에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(이하 "센 터"라 한다.)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 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	제10조(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) ①
② 시장은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자치구 통합사례 관리사, 상담원, 경찰청 학대예방경찰 관 등을 <u>배치할 수 있다</u>	②  배치에 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.
③ 시장은 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사례 관리사에게 업무 수당을 지원 할 수 있다.	③ <삭제>

TII TI OI	ъ т. о.
제 정 안	수 정 안
제10조(통장 및 반장 참여) ① 시장은 구청 장의 협조를 받아서 자치구의 통장 및 반장 (이하 "통반장"이라 한다.)이 복지사각지대 에 놓인 주민들을 발굴하여 찾동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.	제 <u>11</u> 조(통장 및 반장 참여) ①
<ul> <li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반장의 <u>활동</u></li> <li>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</li> <li>성과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li> </ul>	② 의 <u>활동</u> 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③ <삭제>
제 <u>11</u> 조(역량강화) (생략)	제 <u>12</u> 조(역량강화) (제정안 제11조와 동일)
제12조(주민과 협력강화) ① 시장은 찾 동 사업의 주민 참여 및 주민자치의 저 변 확대를 위해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동의 협력자로 위촉할 경우,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 소요되는 실비 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 리 조례」에 따라 자치구의 찾동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 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	<삭제>
제13조(수행인력 안전확보) (생략)	제13조(수행인력 안전확보) (제정안과 동일)
제14조(비밀준수) 찾동 업무에 종사하거 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	<삭제>

제 정 안	수 정 안
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제15조(예산 지원) <u>서울특별시장은</u> 예산 의 범위에서 찾동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제 <u>14조(예산 지원) 시장은</u> <u>안에서 찾동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</u> 

###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아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"찾아가는 동주민센터"(이하 '찾동'이라 한다)란 동 단위 지역사회에서 주 민 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민과 관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활동체계를 말한다.
  - 2. "주민"이란 동 단위 행정구역에서 거주·생활하는 구성원을 말한다.
  - 3. "지역"이란 동 단위 행정구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
  - 4. "지역의 사회보장"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장을 동 단위 지역사회 중심으로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원칙)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찾동의 지역사회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.
  - 1.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
  - 2. 지역사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 발굴 및 지원
  - 3. 지역사회 주민에게 가장 적합한 복지서비스 지원
  - 4. 지역사회 주민 중심의 상시 이웃돌봄 안전망 구축

제4조(책무) ① 시장은 찾동의 지역사회 보장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과 추진 체

- 계를 구축하고,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·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.)과 협력하여 지역 사회의 특성에 맞는 찾동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에 적용하여 지역주민복지 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주민이 시 또는 자치구의 찾동 관련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회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는 찾동의 지역사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- 제6조(기본 계획 등) ① 시장은 찾동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.)을 4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  - 1. 지역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
    - 2. 운영 및 지원체계
    - 3. 주요 성과 분석 및 평가
    - 4. 소요 재원 확보 및 배분
    - 5. 그밖에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필요한 사항
  -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찾동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④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은 「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- 제7조(실행계획 제출 및 보고) ① 시장은 실행계획을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수립 하여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해당연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5월말까지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8조(사업의 범위) 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을

발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**경우에는** 신청 또는 동의를 거쳐 직접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.

- 1. 65세 도래자 등 어르신 가정, 출산가정, 양육수당 수급가정
- 2. 빈곤위기가정, 학대·폭력 등 위기가정
- 3. 그 밖의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② 시장은 지역사회 내에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하여 지역 내 서비스와 연계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에게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와 민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·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지역사회 주민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돌보며 나눔을 실천 하는 주민 주도의 복지공동체를 지원하여야 한다.
- 제9조(공동사업추진 등) 시장은 제8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구 및 복지 관련 기관,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- 제10조(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)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제2호의 시행을 위하여 자치구청장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.)를 설치하여 유영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자치구 통합사례관 리사, 상담원,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 등을 **배치에 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할 수 있다.**
- 제11조(통장 및 반장 참여) ① 시장은 구청장의 협조를 받아서 자치구의 통장 및 반장(이하 "통반장"이라 한다.)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발굴하여 찾동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반장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제12조(역량강화) ① 시장은 찾동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자치구에서 찾동 사업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동과 관련된 교육을 할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시장은 자치구에서 찾동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13조(수행인력 안전확보) ① 시장은 구청장과 협력하여 찾동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 방문인력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  - 1.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
  - 2. 방문간호사
  - 3. 통합사례관리사
  - 4. 그 밖의 시장 및 구청장이 찾동업무 수행인력으로 인정하는 자
  - ② 시장은 구청장과 협력하여 찾동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 할 수 있으며,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시 신체적·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
  - ③ 제2항 후단의 지원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14조(예산 지원)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찾동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